

공정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목) 현행 규정상 매출액의 5% 범위 내로 되어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 적용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동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에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반사업자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 법위반 사실의 객관성의 정도와 과거 법위반 횟수 등 4종의 평가요소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된다. 이때 법 위반행위의 내용 등 4종의 평가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법 위반사실의 객관성과 과거 법위반 횟수보다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유형과 기업규모 및 시장지배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각 평가요소에 상·중·하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중 법 위반행위의 내용의 경우에는 가격담합·입찰담합·공급량 제한·시장분할 등 소위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 경성카르텔을 제외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중, 경성카르텔을 제외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하로 구분하게 된다. 또한 법 위반사업자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의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대기업은 중, 중소기업은 하로 구분하여 기준을 책정하게 되고, 법위반 사실의 객관성 정도 및 과거 법위반 횟수의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공정위는 세 개 구간의 과징금 부과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동 세 개구간은 각각 법 위반행위 기간동안에 있어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5%, 1~3%, 1% 이하이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관련시장이 전국이 아닌 경우나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크게 취약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에 따라 정해진 부과율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만 있고 실행되지 않은 경우나 입찰담합 참가 사업자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규모 및 시장지배력에 따라 과징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기준의 시행으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 기업규모 및 시장지배력에 따른 구분 | 정액과징금 하한선 |
|--|--------------|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100 |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시장지배적사업자이나 시장지 배적사업자가 아닌 대규모기업집 단 소속회사인 경우 | 50 |
| ·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대기업 | 30 |
| · 중소기업 | 5 |